『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고광민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영·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탓에 등하교 및 야외 활동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잦고 돌발행동도 많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.

□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핀란드, 에스토니아 등 일부 유럽

국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·유아 등의 야외 활동 시 형광조끼 및 반사용품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